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5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김용만 · 박상혁 · 김남근
한창민 · 최혁진 · 김승원
문진석 · 천준호 · 문금주
유동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를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기”를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로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u>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 -----<u>그 침해사</u> <u>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u> <u>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u> <u>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u> <u>부장관이나</u>----- -----. -----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u>한다</u>.	② ----- ----- ----- ----- ----- -----<u>하</u>며, <u>관할</u> <u>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u> <u>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u> <u>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u>시기</u>,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u> <u>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u> <u>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u> <u>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u> <u>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u> <u>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u> <u>본다.</u> ⑤ -----<u>방법</u> <u>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u> <u>대상, 시기</u>----- ----- -----.
--	--